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에듀파크**

℃ <u>∥</u>트럴카운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하여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자격요 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당첨자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회신기간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031-655-6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역 및 일정은 예정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1. 공</u>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22-4번지 일원 (안성 공도 용두2지구 라송센트럴카운티 신축공사)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27층, 5개동 총 433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대상 세대수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타입	주택 공급 면적(m²)			기타		총공급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계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수
민영 주택	84A	84.9834	26,1865	111,1699	42,1973	153,3672	281
	84B	84.9837	26,2740	111.2577	42,1975	153,4552	47
	84C	84.9920	25,7627	110,7547	42,2015	152,9562	51
	84D	84.9923	25.9519	110,9442	42,2017	153.1459	54
	합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Ŧ	84A	84B	84C	84D	합계		
	국가유공자		6	0	1	1	8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5	1	1	1	8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5	1	1	1	8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5	1	1	1	8
	장애인	경기도	5	1	1	1	8
		서울특별시	2	1	0	1	4
합계			28	5	5	6	44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단,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 「국토교통부 공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 [시행 주택기금과-1590(2020.02.28.)에 의거 기관추천 예비자 비율을 300%로 확대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분양일정 **(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04. 07. (목)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접수일시	인터넷청약	2022. 04. 18. (월)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사이트 통한 청약접수 ※ 현장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 – 신청 구비 서류 미비자 접수 불가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2. 04. 27. (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 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자격확인 및 서류접수		2022. 04. 28. (목) ~ 2022. 05. 11. (수)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47-4)		
계약체결 기간		2022. 05. 12. (목) ~ 2022. 05. 14. (토)	10:00 ~ 16:00		

- ※ 상기일정은 업무진행 중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정보취약계층)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47-4)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 (10:00 ~ 14:00)가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접수 불가)

2. 특별공급 자격

78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제8호의2 제외)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등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0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소기업그론자 및 군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형 에 신청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 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자격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 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당첨자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 방벙 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 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 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 ①번에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예비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당첨자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선정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예비 지위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만. 특별공급 예비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순번 지위 인정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면,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 유의사항 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 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 색 결과에 따라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자 명단

■ 추천양식

주택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비고

^{*} 통상 주택형은 세대별 공급면적 (m²) × 0.3025로 산출 (예: 111.1699 × 0.3025 = 33.6288 = 33평)

■ 리플렛(앞면)



선택은 행복으로 거주는 품격으로 **%** 안성공도센트럴카운티 에듀피크 오시는길 건본주택 안성공도센트럴카운티 에듀파크 Server Server - 100,000 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22-4번지 일원 건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47-4번지 031)655-6221 NRAL HANTO 시행사 LASONG



안성의 미래가치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22년 완공 예정)





안성공도센트럴카운티 1BL의 성공이 2BL의 기대로 이어지는

안성의 변화를 이끄는 명품 아파트의 탄생

